2021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조경두·이종욱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IC&E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2021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조경두·이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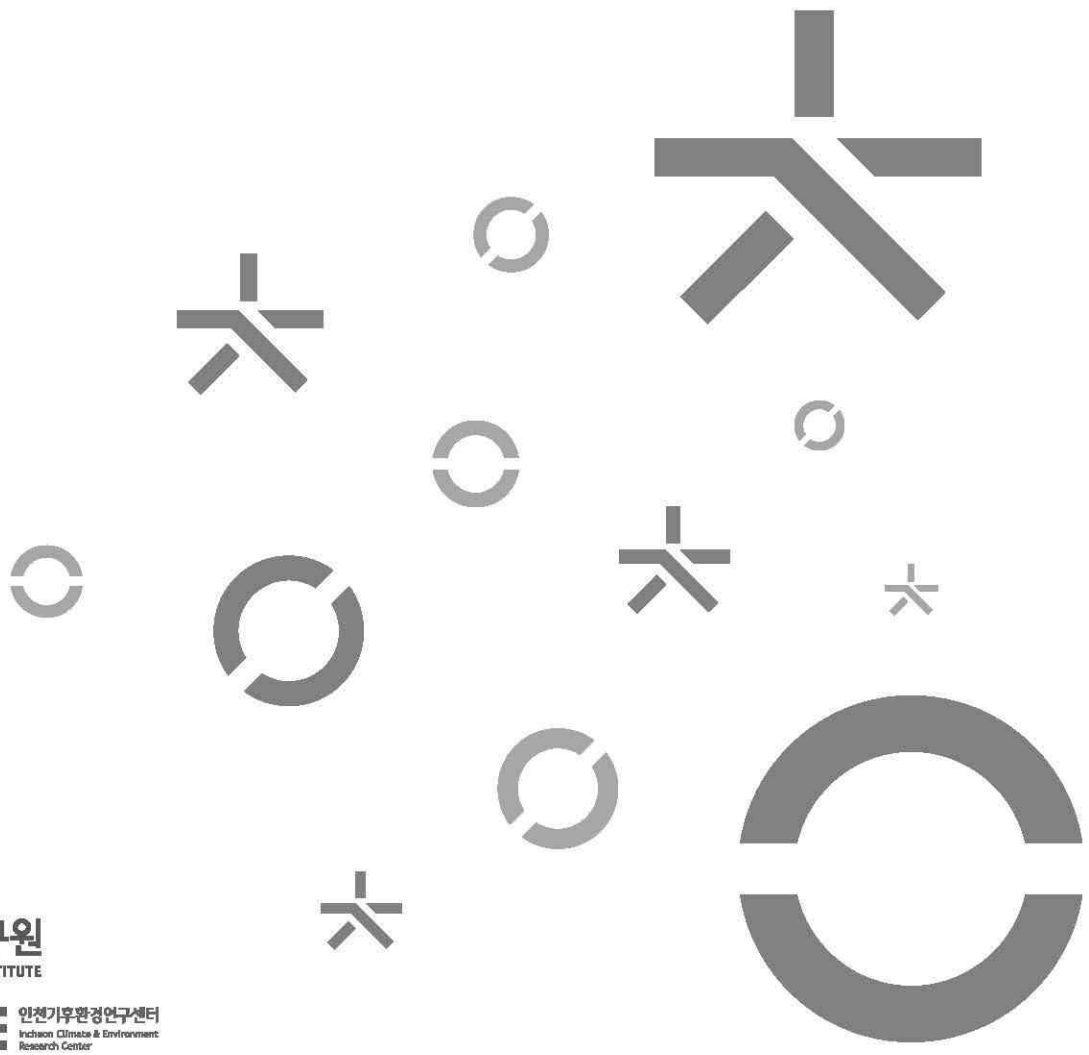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IC&E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연구책임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이종욱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EXECUTIVE SUMMARY

1. 서론

1) 연구 배경

○ 인천광역시는 2002년 7월 15일부로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음 (2014년 5월 26일 일부 개정).

○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시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없어 현업 부서 및 참여 사업자, 시민단체, 수행 용역 업체로부터의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실무상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사업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3)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 구역이며,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 이후 지침서를 적용하고자 함. 내용상 범위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업무 파악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인천광역시 맞춤형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분야별 세부기술 지침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소음 부분 작성임.

4)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지역 언론 보도 사항 조사 분석, 타 시도 지자체 조례 내용 분석,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등의 문헌 조사를 포함하여, 현업 부서 방문 조사, 실무 전문가 간담회 등의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방식을 포함함.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 인천광역시는 2015년까지 8건 정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가 보고된 바 있으나, 최근 인천광역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 3년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천광역시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항만 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위치 특성상 물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다양한 중화학 및 기계 공업 관련 제조 업종들이 밀집하여 입지해 있음.

○ 인천광역시에는 자연환경 보호 관련 민감사항 등에 연계하여 갯벌 매립, 대형 교량 설치, 습지 보호, 육상 생물 서식지 보호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사항들이 존재함.

○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협의 관련 주요 사안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서 작성이 시급히 필요함.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 시행 규칙상 세부 규정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후관리 부분을 보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경우 시행규칙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 이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 상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비교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 분야는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종류임.
- ❍ 해당 5개 사업종류에 대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이 유사한 광역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 12개 대상사업 종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부 관련법별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있으므로 차후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추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 특히, 도시개발 사업 중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대상사업으로 조례에 포함하고 있음.
- ❍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례에 추가할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공공 주택단지 및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시행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 인천광역시의 과년도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 향후 증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조례 개정 시 연평균 5회 이상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 ❍ 인천광역시는 현재 지역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상세 협의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거나 지침서 양식으로 별도 공지하지는 않는 상태이므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지침서 작성이 필요한 실정임.

○ 협의 절차 확립 시, 협의기관(인천광역시장), 검토기관, 주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문서화 및 공지를 통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될 필요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및 검토 결과 통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온라인화시켜 업무상 편의성과 투명성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인천광역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본 근거인 조례가 존재하나 내용상 구체적인 협의 절차 안내가 부족하고, 시행규칙, 관련 고시, 업무절차서 등의 부속 문건 등이 없어 조례 개정 및 협의 절차 문서화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행 취지에 맞추어 수행 건수를 증가시키고 지역 민원사항을 저감 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이 유사한 광역시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 대상사업을 조례 개정 시 포함 시킬 필요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건축사업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 중 건축법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조례에 대상사업으로 추가가 필요함.

○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협의 절차상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검토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환경 영향 고려 및 국제적 기여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이었음.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시 개선 사항

1) 절차 표기 개선 사항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안내 개선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기관(인천광역시장), 검토기관 등 간의 역할 차이, 협의 단계별 흐름의 유기성, 사업승인 의사 결정, 제출 통보 등의 필수 정보가 일정과 함께 표기될 수 있도록 함.

2)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 주요 내용

○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 개요, 평가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협의 결과 사후관리, 5개 부분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 개정과 함께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을 시청 관계 부서 협의 하에 확정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임.

○ 소음·진동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체적으로 개요,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사업별 검토사항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본문 성격인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부분은 현황 조사, 영향예측, 평가, 저감 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5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함.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 현재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은 (EIASS)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 환경영향평가과 주관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은 크게 사업조회 및 협의 통계제공 등의 공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지원 시스템 영역, 사업등록 및 평가 정보입력을 위한 시스템 영역,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위에 사업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영역 세 가지로 구분됨.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 서울특별시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EIMS)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제공 및 상세 조회에 기능 집중시킨 형태임.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은 서울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 및 공지사항을 게시하기 위한 영역 이외에 크게 평가진행사업, 평가완료사업, 심의위원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핵심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수도권 지자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초기 단계의 정보지원시스템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 ❍ 그 시작 단계로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협의 현황 조회 및 협의 문건 등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향후,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사업에 대한 대장 형식의 건별 상세조회기능, 진행 완료 사업에 대한 기록저장 및 조회기능, 심의위원회운영 및 주민참여에 대한 공지 기능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및 제언

- ❍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 없어 현업 부서 및 사업자, 시민 단체, 대행 업체로부터의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 인천광역시에서 조례 제정 후 2015년까지 8건 정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가 보고된 바 있으나, 최근 지난 3년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인천광역시 조례의 경우 시행규칙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 이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에는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종류가 누락되어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대상 사업종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부 관련법별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있으므로 차후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추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향후 증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조례 개정 시 연평균 5회 이상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주관 부서와의 회의 및 수도권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사안들을 파악하였음. 또한, 인천광역시의 소음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환경과와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소음 관련 현안 사항과 기타 의견을 수렴함.
-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 개요, 평가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협의 결과 사후관리, 5개 부분으로 작성하였음. 소음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체적으로 개요,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사업별 검토사항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본문 성격인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부분은 현황 조사, 영향예측, 평가,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 향후,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사업에 대한 대장 형식의 건별 상세조회기능, 진행 완료 사업에 대한 기록저장 및 조회기능, 심의위원회운영 및 주민참여에 대한 공지 기능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차례

TABLE OF CONTENTS

1 서론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범위 ····· 4
4. 연구 방법 ····· 5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 9
   1)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실적 ····· 9
   2)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천광역시 환경여건 ····· 10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 11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 12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14
   1)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 14
   2) 인천광역시 누락 대상사업 종류 및 타 지자체 비교 현황 ····· 17
   3) 대상사업별 세부 범위 및 관련 법규 적용 현황 ····· 18
   4)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증가 예측 ····· 23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 26
   1) 국내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 26
   2) 해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례 및 특징 ····· 27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 32
   4) 협의 절차 효율화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32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34

차례

TABLE OF CONTENTS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1. 협의 절차 흐름도 표기 ····· 39
2. 협의 절차 일정 표기 ····· 41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 41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 45
   1) 정보지원 시스템 ····· 46
   2) 정보입력 시스템 ····· 50
   3) 지리정보 시스템 ····· 51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 53
   1) 평가진행사업 ····· 54
   2) 평가완료사업 ····· 55
   3) 심의위원회 ····· 57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57
   1) 기후환경연구센터 임시 웹사이트 시안 ····· 57
   2) 현황 개선방안 ····· 58
   3) 향후 구축 목표 및 계획 ····· 59

5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 63

참고문헌 ····· 66

부록 ····· 69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비교 ····· 10
[표 2-2]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동물 현황 ····· 11
[표 2-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특성 ····· 13
[표 2-4]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6
[표 2-5] 인천광역시 조례 누락 대상사업 종류의 타 지자체 포함 여부 ····· 18
[표 2-6]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 비교표 ····· 1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연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 ····· 25
〔그림 2-2〕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용 용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 ····· 25
〔그림 2-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 29
〔그림 2-4〕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 31
〔그림 3-1〕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기를 위한 개념도 ····· 39
〔그림 3-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식 초안 ····· 40
〔그림 3-3〕 평가서 초안 단계 협의 예상 기간 ····· 41
〔그림 4-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EIASS) 접속화면 ····· 45
〔그림 4-2〕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전체 목록 조회 화면 ····· 46
〔그림 4-3〕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상세정보 조회 화면 ····· 47
〔그림 4-4〕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현황 조회화면 ····· 48
〔그림 4-5〕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대장 조회 화면 ····· 48
〔그림 4-6〕 EIASS 국민참여영역 협의진행현황 조회 화면 ····· 49
〔그림 4-7〕 EIASS 국민참여영역 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등록 화면 ····· 50
〔그림 4-8〕 EIASS 정보입력 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정보 사업등록 사례 ····· 51
〔그림 4-9〕 EIAGIS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시스템 초기접근화면 ····· 52
〔그림 4-1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접속화면 ····· 53
〔그림 4-11〕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조회화면 ····· 54
〔그림 4-12〕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평가서 및 사업정보 제공화면 ····· 55
〔그림 4-13〕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조회 화면 ····· 56
〔그림 4-14〕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상세 조회 및 평가서 단계별 조회 ····· 56
〔그림 4-15-가〕 인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초기운영 시안-협의 현황조회 화면 ····· 58
〔그림 4-15-나〕 인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초기운영 시안-관련 협의 문건 접근을 위한 접속화면 ····· 58
〔그림 4-16〕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안 ····· 59

1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02년 7월 15일부로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음 (2014년 5월 26일 일부 개정).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관할 구역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환경정책위원회에 의한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의 적용,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기술 함.

○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시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 없어 현업 부서 및 참여 사업자, 시민단체, 수행 용역 업체로부터의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실무상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사업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인천광역시 환경 관련 주무부서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절차상 효율성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지역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3.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 구역

○ 시간적 범위 :

- 조사 분석 및 작성 단계 : 2021.03. ~ 2021.09.
- 시범 적용 예상 단계 : 2020.10. ~ 2021.11.
- 업무지침 적용 단계 : 2022년 이후

○ 내용상 범위

-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업무 파악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인천광역시 맞춤형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 평가서 협의,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 등 절차 포괄
  - 절차별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의 역할 등 세부 항목 포함
  -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책 데이터베이스 (Data base) 화를 위한 체계구축
  - 지역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후 협의 시스템 및 역할 점검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분야별 세부기술 지침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소음 부분 작성
-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
- 시범사업 이후 관련 부서 의견 접수 및 지속적 개정 체계 확립

4. 연구 방법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 지역 언론 보도 사항 조사 분석 및 시 현업 부서 방문 조사
- 타 시도 지자체 조례 내용 분석 및 인천광역시 대비 비교 분석
-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와 적용 가능 사례 발굴

○ 인천광역시 맞춤형 지역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 일반 협의 업무 사항 파악 및 타 시도 가이드라인 문건 확인
- 현업 부서 방문 조사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반영
-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인천광역시 적용 가능 외부 사례 반영

○ 분야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 및 소음 부분 선행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 적용 기술 가이드라인 조사
- 지역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범위 및 내용 확인
- 작성 필요내용에 대한 순차적 작성 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적용을 위한 소음·진동 부분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제2장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1)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실적

○ 지자체 주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별도 조례가 존재하는 시도에서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환경 기본 조례에만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두어서는 실효성 없는 실정),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함. (선효선·조공장, 2015).

○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자체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실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에 준하는 환경영향평가 운영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 〔표 2-1〕 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까지 8건 정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가 보고된 바 있으나, 최근 인천광역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 3년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비교

구분	운영건수	사업유형
인천광역시	8	도시개발, 도로, 골프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특별시	128	도시개발 등
제주특별자치도	185	건축물, 관광사업, 양식장 등
부산광역시	30	건축물,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강원도	8	리조트, 석산개발 등
경상남도	29	도시개발, 하천조성, 도로건설, 토석채취 등
광주광역시	6	도시개발 등
대전광역시	5	도시개발, 체육시설 등

자료(출처) : 선효선·조공장(2015)

2)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천광역시 환경여건

❍ 인천광역시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항만 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위치 특성상 물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다양한 중화학 및 기계 공업 관련 제조 업종들이 밀집하여 입지해 있음.

❍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 대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위치해 있는 환경 특성상, 개발을 위한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 및 동식물이 존재하는 여건에 처해 있음.

❍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표적인 환경 자원은 2014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인근 갯벌 지역이 있으며, 또한 인천 해안 지역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쉽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 EAAFP)에 네트워크로 등록된 철새 서식지이기도 함.

❍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으로는 세계적으로 4000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저어새와 1만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있음. 또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종은 〔표 2-2〕와 같이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음.

〔표 2-2〕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동물 현황

구분	종명	주요 서식지
식물(6종)	끈끈이주걱	무의도
	붉노랑상사화	강화도
	이삭귀개	계양산
	통발	계양산
	꾸지뽕나무	계양산
	갯방풍	인천연안 사구
곤충류(7종)	늦털매미	인천 전역
	대모잠자리	공촌천,계양산 등
	톱사슴벌레	강화도
	늦반딧불이	계양산
	큰주홍부전나비	계양산,마니산
	사슴풍뎅이	무의도,마니산
	아이누길앞잡이	무의도
	버들치	공촌천
	쌀미꾸리	공촌천
양서·파충류(3종)	아무르산개구리	인천대공원, 강화도
	도롱뇽	인천대공원, 강화도
	줄장지뱀	인천대공원, 강화도
조류(5종)	바위종다리	강화도 참성단
	오색딱다구리	인천 전지역
	뻐꾸기	인천 전지역
	곤줄박이	인천 전지역
	해오라기	공촌천
포유류(1종)	멧밭쥐	계양산,마니산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현황, https://www.incheon.go.kr/env/ENV040101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 인천광역시에서 최근 언론 보도 사항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민원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을 때, 자연환경 보호 관련 민감사항 등에 연계하여 갯벌 매립, 대형 교량 설치, 습지 보호, 육상 생물 서식지 보호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사항들이 존재함.

❍ 2021년 상반기까지 제기된 바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송도 람사르 습지 및 해안 생태계 훼손
- 송도-시흥 연결 배곧 대교 신규 건설
- 영종도 연결 제3연륙교 건설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소래포구 인근 물류센터 관련 환경영향평가
-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후 대체 매립지 선정 (영흥도, 영종도 등 후보지 관련 사항)
-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자원순환센터 (청라 소각장 등) 기존 시설 현대화 및 신규 시설 설치
- 남동 공단 북쪽 남촌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 검단 중앙 공원 조성 대한 민간특례사업 선정 관련
- 송도 테마파크 조성 예정 부지 토양오염 및 소음 관련 사안

○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갯벌 매립 및 습지 보호, 생태계 서식지 보호 등과 관련된 환경 현안 이슈가 인천광역시 행정 구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협의 관련 주요 사안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서 작성이 시급히 필요함.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17개의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중 인천광역시와 환경적 특성 및 지리적 입지 여건이 비슷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및 전국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을 〔표 2-3〕과 같이 분석하였음.

○ 우선,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자체의 「환경기본조례」에서 조례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이외에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2019.1.17. 시행)을 제정하여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와 함께 세부 실시 절차를 (평가서 작성 절차,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개괄적으로 기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2016.12.30. 시행)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 규칙상에 사후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을 별도 표로 기재하여 사후관리 부분을 보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경우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조례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관련 법령과 함께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 요청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인가 시점 및 제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표 2-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특성

지자체 조례특성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대구	울산
별도 조례 제정	●	●	●	●	●	●	●	-	-
시행규칙 여부	-	●	-	-	-	-	-	-	-
사후관리 조례	-	▲	-	▲	-	-	●	-	-
대상사업 범위	●	●	●	●	●	●	●	-	-
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시기	●	●	●	-	-	-	-	-	-

* 범례 : ● 해당 있음, ▲ 부분 해당, - 해당 없음.

** 대구 울산의 경우 「환경 기본 조례」에 실시근거만 기술. 사후관리 관련하여 서울 및 부산은 제주와 같이 별도 조례 없이 관련 항목 포함.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1)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아래의 1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적용 대상사업의 크기와 함께 관련 법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 (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공항 및 비행장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 지자체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조례도 상기 대상사업 종류 구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사업 및 건축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에 포함함.

○ 지자체 조례에 기재된 대상사업당 크기의 범위는 상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 범위의 50% 이상 100% 미만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50% 이하 크기에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포함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중 대상 사업면적을 7만5천㎡ 이상 25만㎡ 이하로 규정하여 30%까지 확대하여 대상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상기 17개 종류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확대 적용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위의 50% 이상 100% 미만에 준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현황은 다음의 〔표 2-4〕와 같음.

〔표 2-4〕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연번	종류	사업분야	대상 사업 및 범위
1	도시개발	7개	가. 도시개발사업 (12만5천~25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 (10만~20만㎡) - 주차장시설 (10만~20만㎡) - 시장 (7만5천~15만㎡) 다. 주택건설사업 (15만~30만㎡) 라. 택지개발사업 (15만~30만㎡) 마. 유통단지개발사업 (10만~20만㎡) 바.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10만~20만㎡) 사. 물류터미널설치사업 (10만~20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5개	가. 산업단지개발 (7만5천~15만㎡) 나. 단지조성사업 (7만5천~15만㎡) 다. 공장설립사업 (7만5천~15만㎡) 라. 공업용지조성사업 (7만5천~15만㎡) 마. 산업기술단지조성 (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사업	3개	가. 광업채광사업 (15만~30만㎡) 나. 저유시설 설치 (5만~10만㎘) 다. 석유비축시설 설치 (5만~10만㎘)
4	도로의 건설	1개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3~4㎞, 확장 5~10㎞ *2차로 이상)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개	하천공사 (5~10㎞)
6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2개	가. 매립사업 - 지정항만, 신항만 (1만5천~3만㎡) - 매립사업 (15만~30만㎡) 나. 간척·개간사업 (50만~100만㎡)
7	관광단지 개발	3개	가. 관광사업 (15만~30만㎡) 나. 관광단지조성 (15만~30만㎡) 다. 온천개발사업 (15만~30만㎡)
8	산지의 개발	1개	산지전용면적 (10만~20만㎡)
9	특정지역의 개발	1개	1호~8호,10호,15호의 지역균형개발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	5개	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2만5천~25만㎡) 나. 경륜·경정설치 (12만5천~25만㎡) 다. 청소년수련시설설치 (15만~30만㎡) 라. 청소년수련지구조성 (15만~30만㎡) 마. 경마장설치 (12만5천~25만㎡)
11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개	소각시설 처리 (1일 50톤~100톤)
12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분야	3개	가. 토석·광물채취 (5만~10만㎡) 나. 광구 단위구역당 광물채취 (1만5천~3만㎡) 다. 골재채취 (채취면적 12만5천~25만㎡) (채취량 25만~50만㎥)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https://www.incheon.go.kr/env/ENV040302

2) 인천광역시 누락 대상사업 종류 및 타 지자체 비교 현황

-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상위 「환경영향평가법」 대비 (총 17개 종류) 누락되어 있는 사업 분야 종류는 〔표 2-5〕와 같이 항만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종류임.
- ❍ 해당 5개 사업종류에 대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이 유사한 광역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 예를 들어 항만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 별표 상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 그밖에도, 휴전선에 인접해있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였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12개 대상 사업종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부 관련법별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있으므로 차후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추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에너지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는 항목이 있음. (송전선로 345kv 이상, 태양/풍력발전소, SRF 발전소 등)
- ❍ 「한국가스공사법」 관련 사업대상의 경우 저장시설(5㎘ 이상, 10만 ㎘ 미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에 의한 사업 개발 가능성이 인천광역시 행정권역 내에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시 해당 항목 포함 여부도 고려해야 함.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와 같이 상위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사업 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사업 및 건축물 설치사업을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듯이, 인천광역시 지역 여건상 별도의 대상사업을 규정해야 하면 추가적인 포함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5〕 인천광역시 조례 누락 대상사업 종류의 타 지자체 포함 여부

대상사업종류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항만건설사업	-	-	●	-	●
수자원개발사업	-	-	-	-	●
철도건설사업	-	●	●	●	●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	-	-	-	-
국방 군사시설 설치 사업	-	●	●	●	-
별도 추가 사업대상	-	-	-	-	●

3) 대상사업별 세부 범위 및 관련 법규 적용 현황

○ 지방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상기 조사 사항과 같이 그 종류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되 보다 크기가 작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지자체 조례상의 별표 양식으로 그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종류별 대상사업과 대상 크기 기준, 관계 법령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

○ 대상사업 종류별 대표적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있으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에너지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이 있으며 항만건설에 관련하여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이 있음.

○ 도로건설 사업에 관련하여 「도로법」, 철도건설 사업에 관련하여 「궤도 운송법」 등이 있으며,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하천법」 등이 있음. 개간 매립사업에 관련해서는 「공유 수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온천법」 등이 있음.

○ 산지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이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며, 국방시설에 관련하여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토석 모래 자갈 광물 채취사업에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 등이 관련되어 있음.

○ 지자체별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비교는 과거에 조사된 바 있으나 (성현찬·민수현, 2003), 인천광역시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도 및 전국 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대상사업의 크기와 관계 법령의 차이를 최근의 자료와 함께 분석한 내용은 다음의 〔표 2-6〕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2-6〕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 비교표

	관계법령	대상	기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법	사업면적	≥12.5, 〈25만㎡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면적	≥9, 〈30만㎡		●					
			≥10, 〈30만㎡							●
			≥15, 〈30만㎡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통사업면적 주차사업면적 시장사업면적	≥10, 〈20만㎡ ≥10, 〈20만㎡ ≥7.5, 〈15만㎡	●	●	●	●	●	●	●
	주택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	●	●
	택지개발촉진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	●
	택지개발촉진법 / 공공주택특별법	사업면적	≥9, 〈30만㎡		●					
	유통산업발전법	사업면적	≥10, 〈20만㎡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면적	≥10, 〈20만㎡	●	●	●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10, 〈20만㎡	●	●	●	●	●	●	●
	교육기본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하수도법	1일처리능력	≥5, 〈10만㎥			●	●	●	●	
	농어촌정비법	사업면적	≥10, 〈20만㎡			●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12.5, 〈25만㎡			●			●	
	건축법	연면적	≥10만㎡		●	●				
		연면적 층수 높이	≥10만㎡ ≥50층 ≥200m				●			

	관계법령	대상	기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7.5, 〈15만㎡	●	●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사업면적	≥7.5, 〈15만㎡	●	●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7.5, 〈15만㎡	●		-	-	●	●	●
	도시개발법	사업면적	≥7.5, 〈15만㎡	●	●	-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사업면적	≥7.5, 〈15만㎡	●	●	-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5만㎡			-	-			●
		사업면적	≥7.5, 〈15만㎡					●		
에너지개발사업	광업법	채광면적	≥15, 〈30만㎡	●						
	송유관안전관리법	저장용량	≥5, 〈10만kl	●	●		●	●	●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저장용량	≥5, 〈10만kl	●	●		●	●	●	
	전기사업법	송전선로 345kv이상	≥5, 〈10km		●	●	●	●	●	●
		태양/풍력발전소	≥5, 〈10만kw			●				●
		SRF발전소	≥0.5, 〈1만kw			●				
		송전선로 154kv이상	≥5km							●
		옥외변전소 154kv이상	존재 시							●
	전원개발 촉진법	태양/풍력발전소	≥5, 〈10만kw			●				
		SRF발전소	≥0.5, 〈1만kw			●				
		송전선로 154kv이상	≥5km							
		옥외변전소 154kv이상	존재 시							●
	한국가스공사법	저장시설	≥5, 〈10만kl					●		
항만건설 사업	어촌어항법	공유수면매립 (외곽,계류,어항)	≥1.5, 〈3만㎡				●			
		어항 사업면적	≥7.5, 〈15만㎡				●			
		공유수면매립	≥1만㎡							●
	항만법	공유수면매립 (외곽,계류,어항)	≥1.5, 〈3만㎡				●			
		어항 사업면적	≥7.5, 〈15만㎡				●			
		공유수면매립	≥1만㎡							●
	신항만 건설 촉진법	공유수면매립 (외곽,계류,어항)	≥1.5, 〈3만㎡				●			●
		어항 사업면적	≥7.5, 〈15만㎡				●			
		공유수면매립	≥1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	≥1만㎡							●

	관계법령	대상	기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도로 건설사업	도로법	도로신설 (폭25m이상)	≥3, 〈4km	●						
		도로신설 (폭25m이상)	≥2, 〈4km		●		●	●	●	●
		도로확장 (2차로이상)	≥5, 〈10km	●	●		●	●	●	●
수자원개발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농어촌 정비법	저수지 (저수용량)	≥30만㎥							●
철도 건설사업	궤도운송법	삭도길이	≥1, 〈2km		●		●			
		삭도시설	설치							●
		궤도길이	≥2, 〈4km		●					
		궤도길이	〈2km							●
	삭도 궤도법	삭도길이	≥1, 〈2km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법	하천공사-중심길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5, 〈10km	●	●		●	●	●	
			≥3km							●
		하천복개공사 (사업면적/길이)	≥3만㎢ ≥1km							●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사업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면적	≥1.5, 〈3만㎡	●			●			●
		일반 사업면적	≥15, 〈30만㎡	●						
	농어촌정비법	간척, 개간 사업면적	≥50, 〈100만㎡	●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	
		사업면적	≥5만㎡							●
	온천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사업면적	≥10만㎡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사업면적	≥5, 〈10만㎡				●	●	●	
		유원지 사업면적	≥10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시설	≥5, 〈10만㎡		●		●	●	●	
			≥5만㎡							●
		묘지공원	≥12.5, 〈25만㎡		●					
			≥10만㎡							●
	자연공원법	사업면적	≥5, 〈10만㎡		●					
			≥5만㎡							●

	관계법령	대상	기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산지의 개발사업	산지관리법	산지전용면적	≥10, 〈20만㎡	●			●	●	●	
			≥6, 〈20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4, 〈8km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봉안시설 사업면적	≥12.5, 〈25만㎡				●	●	●	
			≥10만㎡							●
	초지법	산지전용허가면적	≥5만㎡							●
특정지역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대상사업	1~ 8호, 10호 ~ 12호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사업	1~ 11호							●
체육시설 설치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12.5, 〈25만㎡	●	●		●	●	●	
	경륜·경정법	사업면적	≥12.5, 〈25만㎡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사업면적	≥15, 〈30만㎡	●			●	●	●	
	한국마사회법	사업면적	≥12.5, 〈25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5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5천㎡		●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폐기물 관리법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50, 〈100ton	●	●	●	●	●	●	
			≥50ton							●
		음식물폐기물 1일처리능력	≥50ton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매립용적	≥15, 〈30만㎡ ≥165, 〈300만㎥			●	●	●	●	
			≥10만㎡ ≥100만㎥							●
		지정폐기물처리 조성면적, 매립용적	≥2.5, 〈5만㎡ ≥12.5, 〈25만㎥			●	●	●	●	
			≥1만㎡ ≥5만㎡							●
	비료관리법	처리시설 1일처리능력	≥50, 〈100ton			●				
	하수도법	처리시설 1일처리능력	≥50, 〈100ton			●				
		분뇨처리시설	존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시설 1일처리능력	≥50, 〈100ton			●				
		처리시설	존재함							●

	관계법령	대상	기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국방 군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16.5, 〈33만㎡		●		●	●		
		사업면적 (골프장포함시)	≥12.5, 〈25만㎡				●			
토석모래 자갈광물 채취사업	산지관리법	훼손면적	≥5, 〈10만㎡	●			●	●	●	
	광업법	광물채취면적 (해안)	≥1.5, 〈3만㎡	●						
	골재 채취법	광물채취면적 (단위구역당)	≥12.5, 〈25만㎡	●						
		채취량	≥25, 〈50만㎥	●						
	하천법	채취면적 (상수원보호구역)	≥1, 〈2만㎡				●	●	●	
		채취면적 (상수원보호 상류방향 5km이내)	≥2.5, 〈5만㎡				●	●	●	
	골재 채취법	채취예정지면적	≥5천㎡							●
		산림,육상골재채취	≥5만㎡							●
		보전임지	≥1만㎡							●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	수산업법	양식어업사육면적	≥5천㎡							●
건축물설치사업	건축법	연면적 (도시내녹지지역, 도시외지역)	≥1만㎡							●
		연면적 (절대,상대보전지 경관보전1및2등급)	≥2천㎡							●

❍ 위의 표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정함에 조례상 나타난 사업의 범위(대상사업 크기) 및 유관 관련 법령은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인천광역시가 조례 개정을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 추가 또는 제외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4)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증가 예측

❍ 도시개발 사업 중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대상사업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설정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의 조건 이외에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조건을 함께 적용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건축 사업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앞에서 알아본 인천광역시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여타 사업들은 그 시행 건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으므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례에 추가할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공공 주택단지 및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환경영향평가 시행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8년에서 2018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95건이였으며, 그중 도시개발 사업이 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김진오·민병욱, 2020)

○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과 함께 증가 될 수 있는 대상 사업 건수를 파악하여 시에서 추가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을 예측하고 인적 자원 및 예산 투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과년도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 향후 증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음.

○ 〔그림 2-1〕 은 2016년 이후 2021년 10월까지 집계된 10만㎡ 이상의 건축물 착공 건수를 나타냄. 2017년에는 착공된 건축물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음. 이후로 해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2019년 7건 2021년 5건의 착공 건수를 보이는 등 지난 5년간 평균 5건 이상의 건축물이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될 수 있었음.

○ 건축물 종류별로 10만㎡ 이상의 건축물 착공 건수를 분석해보면, 〔그림 2-2〕와 같이 공공 주택 및 오피스텔이 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업무시설 7건, 생활형 숙박시설 5건 등이 많은 착공 건수를 보였음.

○ 건축물 착공 건수는 해당 기간 경기 흐름과 주택 공급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동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 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건수는 과거 통계 결과를 반영하여 한동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건수가 없었던 점에 반해, 조례 개정 시 연평균 5회 이상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그림 2-1〕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연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 (201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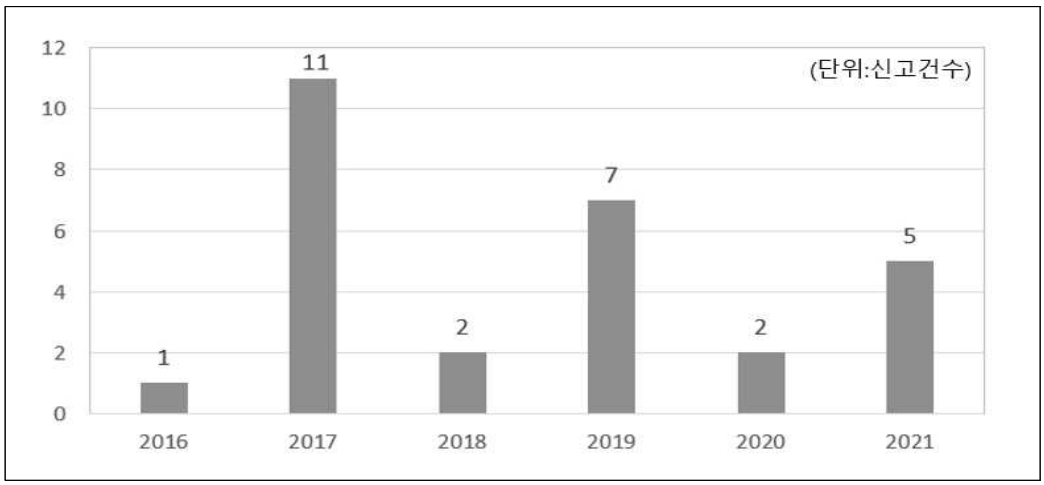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설 동향 및 통계,https://www.incheon.go.kr/build/BU050201

〔그림 2-2〕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용 용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 (201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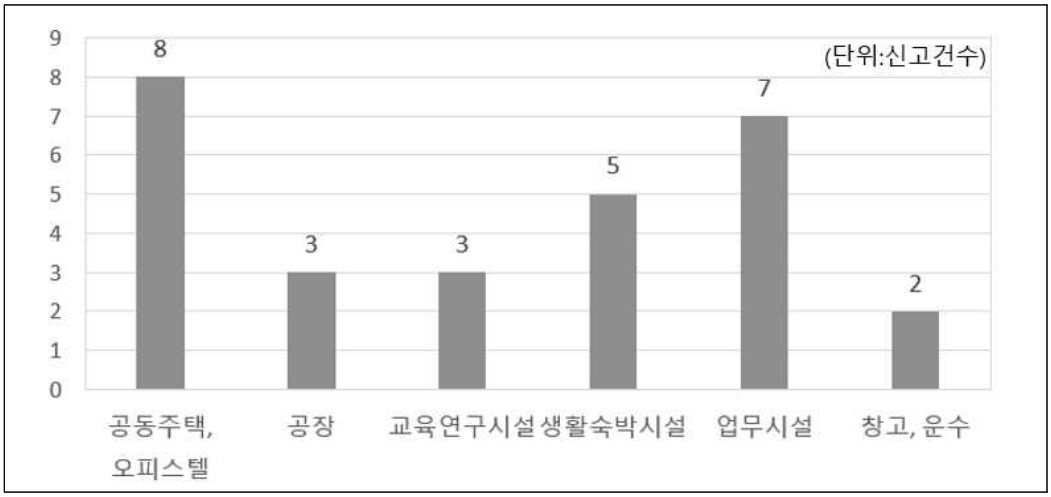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설 동향 및 통계,https://www.incheon.go.kr/build/BU050201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1) 국내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지방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제정한 조례 본문 상에는 협의 절차가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 하위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에 평가서의 작성 절차와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항들이 요건별로 나열되어 있음.

○ 추가로 공지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에는 단계별 주지 사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흐름 등이 도표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업자 및 관계 부서의 업무 이해를 돕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지침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부분 : 도입의 목적, 관계 법령, 협의기관 및 시기, 스코핑 및 스크리닝 제도를 통한 특례 사안 등에 대한 안내
-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부분 : 초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조치, 승인 기관장 검토사항, 초안 재작성 등에 대하여 기술
- 평가서 협의 부분 : 평가서 제출, 협의 절차, 평가서 보완 및 재협의,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 기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 등에 대한 방법을 규정
- 협의 결과 사후관리 부분 : 협의 내용의 이행, 승인 기관장의 관리 감독, 협의 내용 관리 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안내함. 그밖에 서식 및 절차 흐름도를 부록으로 기재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함.

○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절차도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협의 절차는 크게 평가서 계획서 단계, 평가서 초안 단계, 평가서 본안 단계, 사후관리 단계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 협의 단계는 지자체 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있음.

○ 서울, 광주, 부산 등의 광역시도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도는 〈부록 1〉을 참조 바람.

○ 협의 절차의 구분 및 표기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 하나, 전반적인 절차의 흐름은 대체로 일치함. 다만, 협의 절차를 안내한 내용에서 주체를 표기하는 용어의 혼선으로 사업자 및 관계 부서 신규 담당자에게 혼란을 기할 수 있음.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관계행정기관, 주관기관 등의 용어 혼용 및 책임 부서 미기재)

○ 절차 이행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 절차 지침서 내에는 용어 정리 및 정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침서에 책임 부서를 상세 기재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되 행정 절차상의 변경에 (부서 개편 등)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 개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2) 해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례 및 특징

(1)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례

○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크게 계획 (Planning), 영향 진술서 (Impact Statement),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결정 (Decision-making), 결정 사후 (Post Decision), 5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됨.

○ 협의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사업자(proponent), 영향평가 대행사(agency), 시민, 원주민, 관할 구역 지자체, 연방 정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계별 역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협의 절차는 〔그림 2-3〕과 같이 표기되며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단계(Planning) :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 계획 단계부터 일반 대중과 원주민이 참여하도록 조치함. 사업자는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위한 준비를 기관협의 하에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문서화 함. 영향평가 대행사는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문제를 식별하며 지역주민 및 원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도함. 프로젝트 세부 문제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영향평가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침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함. 관할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행정 사항을 이행함. 연방 정부는 필요 시 정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개발 협력을 위한 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함.

- 영향 진술서 단계(Impact Statement) :
  해당 단계는 국내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단계와 부분적으로 유사함. 사업자는 영향평가 진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정보 및 조사 분석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함. 해당 문건에는 과학적 분석과 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함. 사업자는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맞춰 필요한 정보가 적시되도록 함. 대행사는 연방 정부, 관할 지자체, 주민 단체 및 각종 규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해당 문건에 기재되도록 함.
-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
  영향평가단계에서는 대상사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건강,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 혜택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함. 원주민의 권리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논의됨. 대행사와 검토패널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전시킴. 영향평가는 대행사를 통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검토위원회 (Review panel) 통해 진행되는 경우로 구분됨. 대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영향 진술서 (Impact Statement)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는 조건 하에 인터넷 등기소에 공고 후 진행됨. 검토위원회에 의해 진행될 경우 연방 정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할 지자체 등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등기소에 공고를 통해 이행 요청사항을 문서화 하고 평가를 진행함.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며 평가 근거, 결론 및 권장 사항이 포함된 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위원회가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함.
-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
  대상사업의 부정적 영향이 공익에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 장관 혹은 주지사는 협의 결과를 공지함. 협의 결과를 위한 이행 사항 조건들은 의사 결정의 근거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공지함. 이행 사항을 포함한 결정내용은 결정권자인 장관 또는 주지사가 사업자에게 통지함.
- 의사 결정 사후 (Post Decision) :
  대행사는 결정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사후에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non-compliance) 시정하는데 참여함.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함. 위반사항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측 집행관 혹은 분석관의 이행 요청사항 등에 대해 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특징과 시사점

○ 캐나다는 연방 정부의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함. 전체 협의 절차에서 대행자의 역할이 국내 경우보다 확대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영향평가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원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포함하듯 국내 실정에 비교하여 주민 참여도가 높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2-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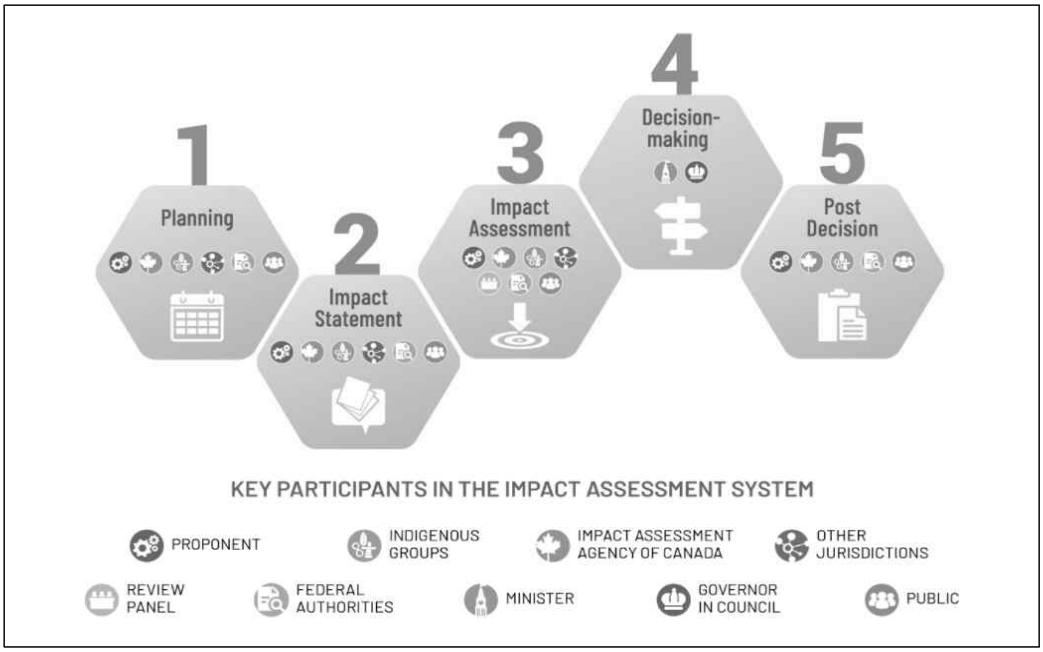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캐나다 환경부, https://www.canada.ca/en/impact-assessment-agency/services/policy-guidance/impact-assessment-process-overview.html

(3)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례

○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직접적인 허가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의 환경영향평가와 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Streategic Environmental Aessemtn – SEA)를 포함하여 보다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정규 절차의 환경영향평가 두 종류로 구분하여 진행함.

○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 세부 협의 절차는 크게 등록 및 스크리닝 (registration and screening), 스코핑 (Scoping), 평가 (Assessment),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Review including public consultation), 의사결정 (Decision), 감정 (Evaluation), 6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 협의 절차는 〔그림 2-4〕와 같이 표기되며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스크리닝 (registration and screening) :
  스크리닝은 해당 사업이 전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적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별도의 리스트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 등을 규정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전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리스트도 적용하여 스크리닝 과정에 활용함.

- 스코핑 (Scoping) :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야하는 범위 설정 단계로,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검토요청을 해야 하며 기관은 6주 안에 스코핑에 관련한 권고 사항을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스코핑 결과는 문서화 하여 주민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사업 계획 및 환경 측면, 대안 설정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평가 (Assessment) :
  평가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써 사업의 목적, 대안 설정 및 평가, 사업 계획 및 프로젝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현황 및 미개발 시 예상되는 영향, 사업에 의한 환경 영향, 제안 사업 및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비교, 저감방안, 제한적 정보에 대한 사항, 요약문 등을 포함해야 함.

-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Review including public consultation) :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네덜란드 환경평가 위원회(Netherlands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 NECA)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임.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함. 검토 보고서는 6주 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민 의견 청취가 포함되는 경우 2주가 연장될 수 있음.

- 의사 결정 (Decision making)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대상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결정 사항들은 사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영향, 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안, NCEA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사안에 따라 인접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까지 파악하여 상대국의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함.

(4)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특징과 시사점

○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와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정규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를 구분하여 진행하는데 특징이 있음. 아울러, 네덜란드 환경평가 위원회(NECA)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검토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정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EU 인접국의 환경 영향을 해당국의 행정기관과 함께 협의하는 부분을 절차상 명기함. 또한, NECA는 네덜란드 본국 환경영향평가 업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의 환경영향평가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2-4〕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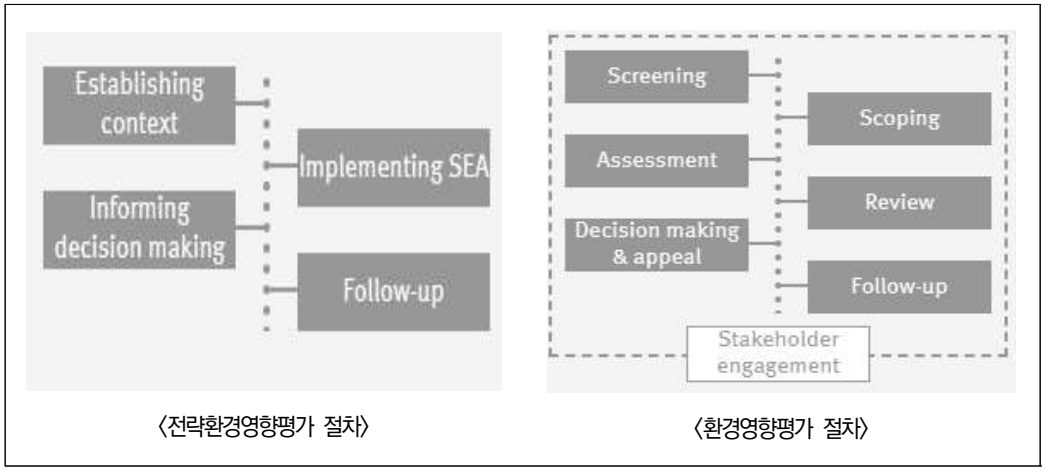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료(출처) : 네덜란드 환경평가위원회 (NCEA), https://www.eia.nl/en/countries/netherlands+(the)/esia-profile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 ❍ 인천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상에 간략히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세부시행 규칙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반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수도권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임.
- ❍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구성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기재하고 협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위원회 심의 사항 중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명기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협의 및 협의 내용관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한다는 조례 조항을 제4조에 명기하고 그밖에 서식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준하여 적용하도록 조례에 표기함.
- ❍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 제5조에 기재하고, 그밖에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 항목을 [별표 3]에 적시하여 행정 업무상 기준을 확립함.
-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제정되었음에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상세 협의 절차를 안내하기에는 그 내용상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가이드라인 등의 부속 문건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4) 협의 절차 효율화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 인천광역시는 현재 지역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상세 협의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거나 지침서 양식으로 별도 공지하지는 않는 상태이므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지침서 작성이 필요함.
- ❍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담 부서는 환경기후정책과의 자연환경팀임. 현재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인천연구원 내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있음.

○ 본 연구를 위한 인천광역시청 내 부서 인터뷰 및 자문 회의 등의 진행을 통해 파악된 잠재적 내부 관련 부서들은 환경국의 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 등도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업무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도로 교통사업과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 도로과, 교통관리과도 업무상 연관성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녹지국의 주거재생과와 녹지정책과가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 그 밖에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및 협의 절차 가이드라인 적용 시, 인천광역시 관할 각 구청의 관련 부서가 내용을 인지하고 구청을 통해 접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적절하게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의해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의 업무 지원이 필요함.

○ 협의 절차 확립 시, 협의기관(인천광역시장), 검토기관, 주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문서화 및 공지를 통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될 필요 있음.

○ 평가계획서 검토 및 스크리닝 및 스코핑 등의 환경영향평가 특례 적용 판단, 사후이행 관리 점검 등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검토기관을 통해 섭외 및 활용이 가능함.

○ 평가서 본안의 심의 및 협의 의견 제시 등을 위한 전문가 집단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 조례 개정 시 환경영향평가에 특화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조례 개정 후 과도기적으로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 하되 적정한 시점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차후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및 검토 결과 통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온라인화시켜 업무상 편의성과 투명성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자료(평가서, 보완서, 검토의견, 사후검토 및 행정조치 등)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검토의견 제출 시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조례가 조기에 제정되었으나, 타 수도권 광역시도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누락되어 있거나 조례상에 구체적 협의 절차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등,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정비가 부족하여 실제 수행 건수가 저조한 상태임.
-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 대도시이므로 각종 개발을 위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위치해 있는 환경 특성상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 및 동식물이 풍부한 지리적 특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이 절실한 상황임.
- ❍ 인천광역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본 근거인 조례가 존재하나 내용상 구체적인 협의 절차 안내가 부족하고, 시행규칙, 관련 고시, 업무절차서 등의 부속 문건 등이 없어 조례 개정 및 협의 절차 문서화가 필요한 실정임.
- ❍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행 취지에 맞추어 수행 건수를 증가시키고 지역 민원사항을 저감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상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5개 사업 분야인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중, 인천광역시와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이 유사한 광역시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 대상사업을 조례 개정 시 포함 시킬 필요 있음.
- ❍ 특히,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건축사업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 중 「건축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조례에 추가가 필요함.
- ❍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설정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의 조건 이외에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조건을 함께 적용하므로, 조례 개정 시 건축물 층수와 높이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함.
- ❍ 전국 광역시도에서 공지하고 있는 협의 절차의 표기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 하나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서 단계, 평가서 초안 단계, 평가서 본안 단계, 사후관리 단계

4가지로 구분해 나타낼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 협의 단계 역시 위의 기본 틀에 근거하여 이행 주체별 필요 업무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는 협의 절차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지자체 시행 사례를 참조하여 협의 절차를 확립하더라도 누락사항 없이 구체성이 적정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협의 절차상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검토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환경 영향 고려 및 국제적 기여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사점이었음.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1. 협의 절차 흐름도 표기

○ 기존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기를 위한 흐름도는 (절차에 대한 그림 표기) 일관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전반적 절차를 안내하는데 제약이 있음.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기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적용함.

- 사업자와 협의기관(인천광역시장), 검토기관 등 간의 역할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함.
- 사업자는 승인 등을 받아야하는 일반 사업자와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기관 사업자를 구분하여 용어 정의에 표기하고, 협의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절차상 승인의 주체로 표기하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구분을 더욱 확실히 함.
- 주요 협의 업무인 사업자로부터의 '제출'과 협의기관으로부터의 '통보'가 구분되도록 작성함.
- 전반적인 단계별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도록 〔그림 3-1〕의 형태로 작성함.
- 사업승인 의사결정과정이 나타나도록 작성함.
- 사업자 및 협의기관, 검토기관 등이 절차상 필요로 하는 (제출·통보 기한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하도록 작성함.

〔그림 3-1〕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기를 위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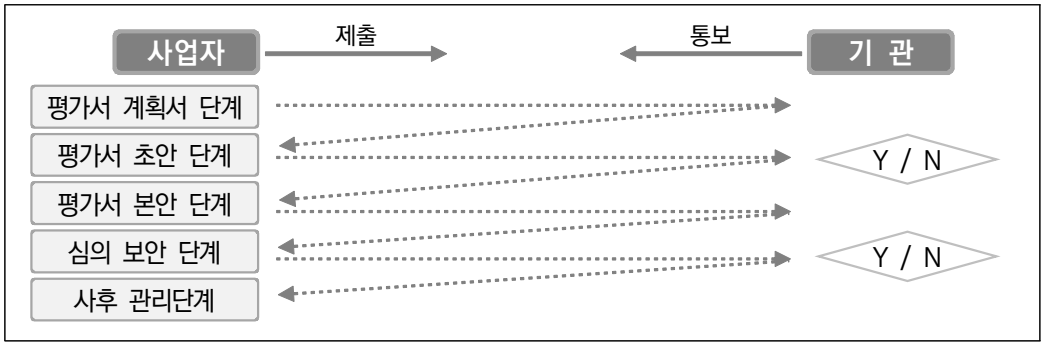

○ 다음의 〔그림 3-2〕는 위의 작성 방향을 반영하여 협의 가이드라인에 표기된 절차도임.

〔그림 3-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식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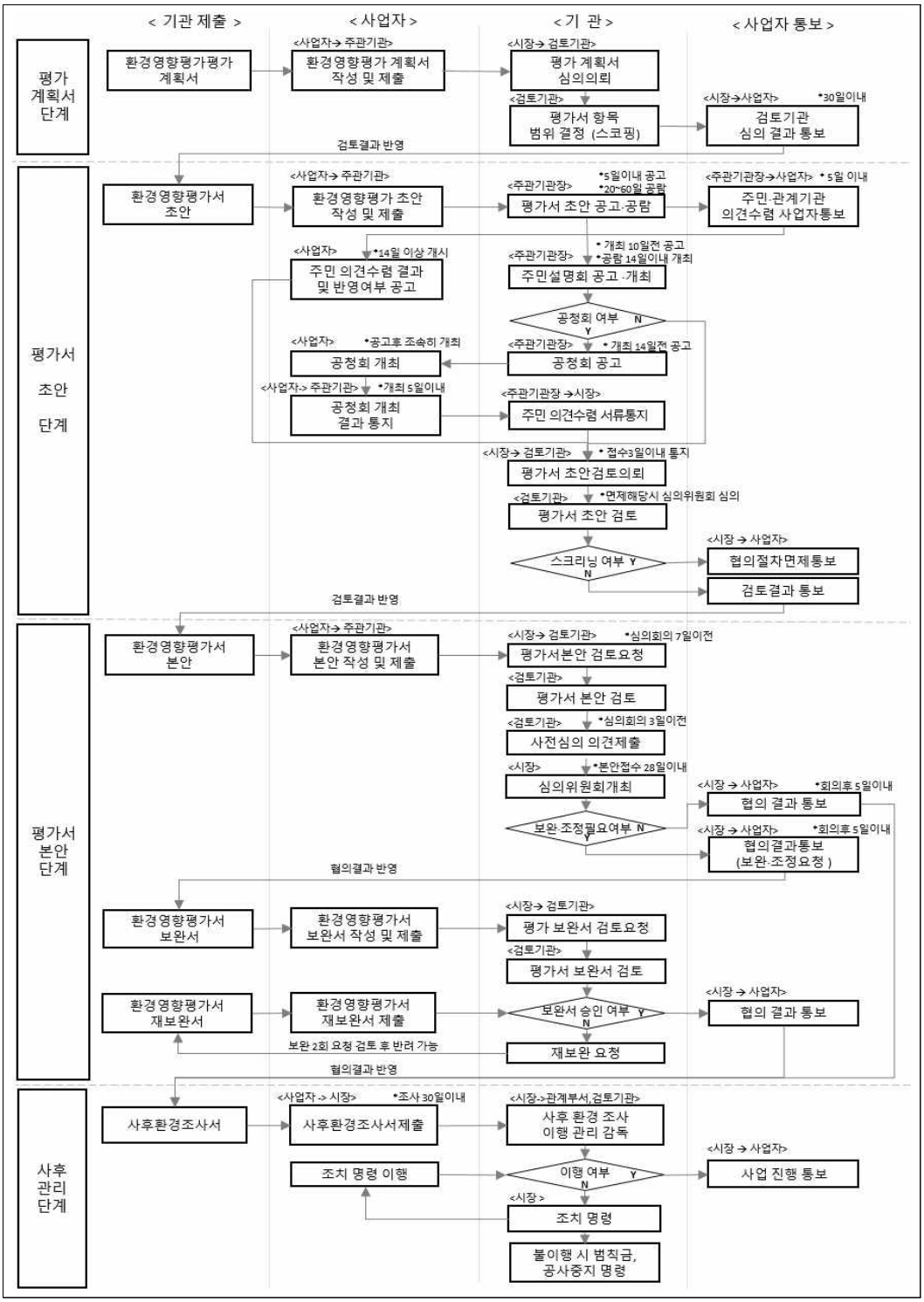

2. 협의 절차 일정 표기

○ 단계별 기간을 절차 흐름도 상에 함께 표기하였으며, 전반적인 협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 평가계획서 단계에서 시장은 30일 이내 검토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한 달가량 소요됨,
-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는 아래 그림 〔그림 3-3〕과 같이 공청회 실시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나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 적용 시, 공청회가 없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의 시장 통지까지 약 22~70일, 공청회가 있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의 시장 통지까지 약 43~101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평가서 본안 단계의 경우 본안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한 달가량 소요됨,

〔그림 3-3〕 평가서 초안 단계 협의 예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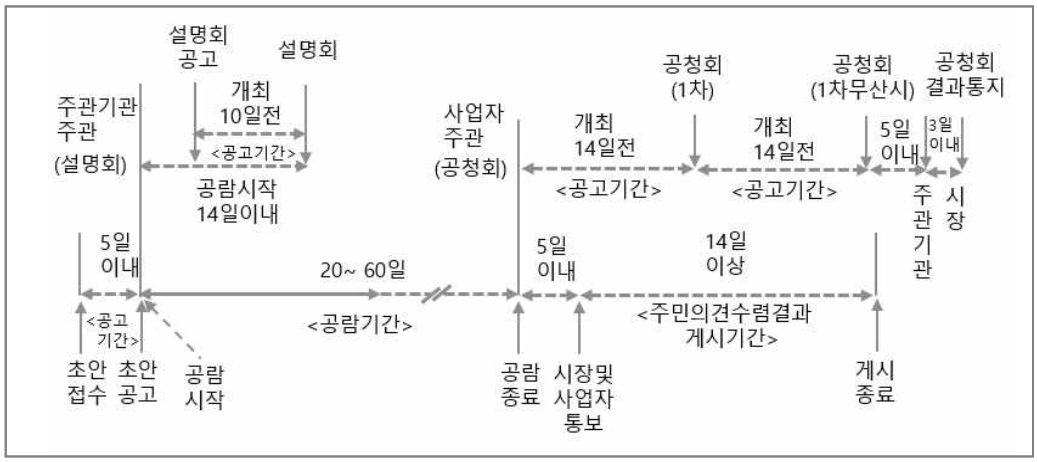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는 별책 부록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 및 소음·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초안'에 상세히 기재함.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 현재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은 (EIASS)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 환경영향평가과 주관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은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을 통해 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림 4-1〕의 해당 환경영향정보지원시스템은 크게 사업조회 및 협의 통계제공 등의 공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지원 시스템 영역이, 사업등록 및 평가 정보입력을 위한 시스템 영역,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위에 사업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영역 세 가지로 구분됨.

〔그림 4-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EIASS) 접속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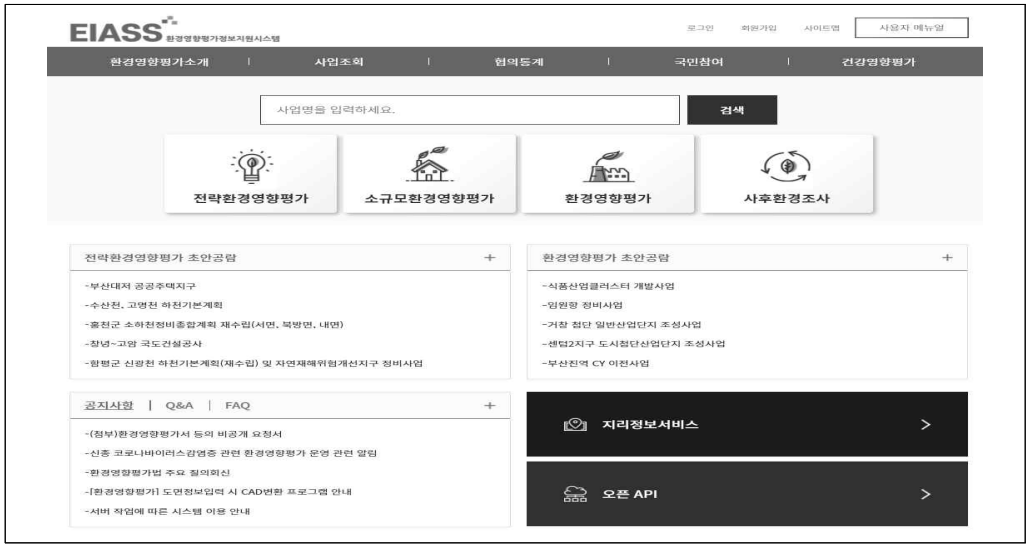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1) 정보지원 시스템

○ 사업조회 영역에서는 전국단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을 받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전체 목록 조회가 가능하며, 담당협의기관별로 사업명, 사업지 주소, 평가대행자 등의 조회를 통해 관심 사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음.

○ 사업별로는 〔그림 4-2〕와 같이 사업코드, 계획 및 사업 성격상 평가 구분 (도시관리계획, 공공주택지구, 공장, 도로 등), 사업명, 접수일, 진행현황 등을 게시판 상단에서 목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4-3〕에서 보이듯이 사업선택 시 사업 위치, 협의 근거,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사업 규모 및 비용, 사업 기간 등의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함.

〔그림 4-2〕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전체 목록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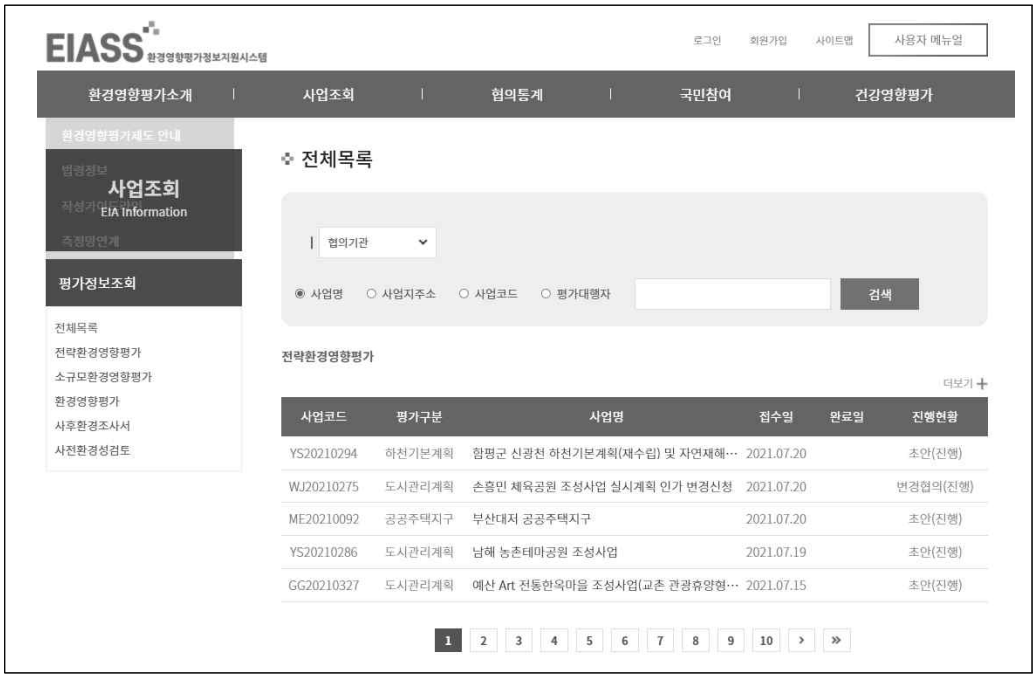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그림 4-3〕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상세정보 조회 화면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 협의 조회 영역에서는 협의현황조회와 협의대장조회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림 4-4〕와 같이 협의현황 조회를 통해 평가서구분, 사업구분, 협의기관 및 협의결과 상태에 따라 협의 통계조회가 가능함.

○ 협의대장조회는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평가 등의 다양한 영향평가서를 대장 형태로 조회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그림 4-5〕 와 같이 협의기관 및 담당자, 진행현황, 사업코드 등의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함.

〔그림 4-4〕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현황 조회화면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그림 4-5〕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대장 조회 화면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 국민 참여 영역은 협의진행사항, 평가서초안공람,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행정처분 현황 등의 조회기능을 제공하며, 〔그림4-6〕 와 같이 협의기관별 사업을 평가서 형태에 따라 조회하고 상세내용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참여 영역을 통해 평가항목 결정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그밖에 제반 행정처분 현황 전체가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됨.

○ 국민 참여 영역의 주 기능은 기본적인 사업조회와 함께, 〔그림 4-7〕 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 조회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웹사이트 로그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그림 4-6〕 EIASS 국민참여영역 협의진행현황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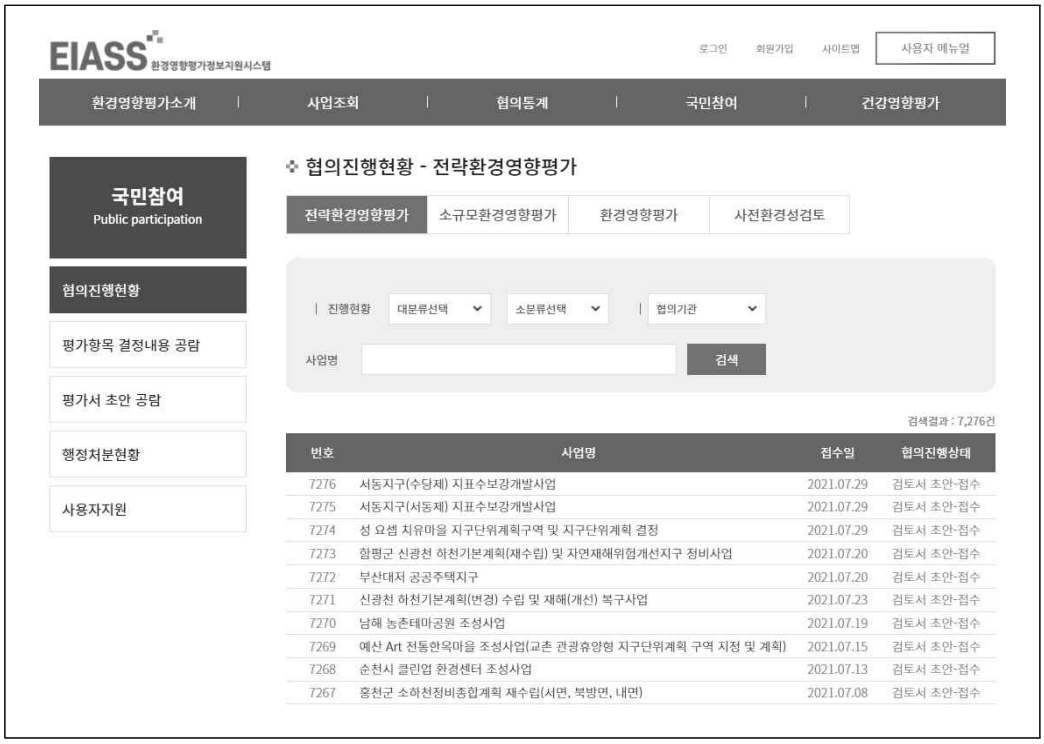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그림 4-7〕 EIASS 국민참여영역 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등록 화면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2) 정보입력 시스템

- ❍ 정보입력시스템은 평가서 형태별 사업등록, 평가정보 입력, 평가항목 결정내용 등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림4-8〕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협의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보입력이 이루어짐.
- ❍ 입력단계는 승인요청 전까지 정보입력 중 단계로 저장 및 수정 등을 통해 정보추가 입력이 가능하며, 승인요청 후에는 접수 중 단계로 넘어가 관계기관 검토가 이루어짐.
- ❍ 사업등록 형태는 평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신규사업등록, 기존사업등록, 초안생략, 본안등록, 변경협의, 사후환경조사 등록 등이 가능함.
- ❍ 평가정보입력은 기본정보 영역에서 사업유형, 사업명, 대행자, 초안공고, 설명회일시, 의견제출기한 등의 정보입력이 이루어지며, 상세정보영역에서 평가서 영역별 등록 및 도면 등록 등이 이루어짐.
- ❍ 그밖에 평가항목 결정내용은 검토 결과 등 공개가 필요한 결정내용에 대해서 관련 파일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그림 4-8〕 EIASS 정보입력 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정보 사업등록 사례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사업자 등록 세부메뉴는 ID로그인이 필요하며 위 그림은 매뉴얼 화면자료임

3) 지리정보 시스템

○ 지리정보 시스템은 사업검색, 공간분석,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환경지표 현황정보, 사전검토사항 조사지원 등의 기능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하에 제공하고 있음. 〔그림 4-9〕는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시스템 접근 시 초기화면임.

○ 예를 들어 사업검색기능의 경우 사업명, 사업코드, 사업자 등 원하는 조건 검색을 통하여 사업부지의 Polygon 파일을 지리정보시스템상 SHP 파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검색 기능은 그밖에 다양한 정보들을 레이어 기능을 이용하여 표출할 수 있으며, 사업별 부지 정보를 공간좌표에서 보여줌.

○ 공간분석기능은 토지이용분석, 표고분석, 경사도분석, 능선분할분석, 지형축분석, 지적분석 등을 공간좌표 도면 위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게 함.

○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자료를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의 항목별로 제공하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함께 제공함.

○ 환경지표 현황정보는 대기환경측정소 등과 같은 인근 측정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능을 수행함. 그밖에 기초 지역 정보를 제공하며,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현황조회도 함께 제공함.

○ 사전검토사항 조사지원 기능의 경우 그리기 조회를 통해 관심 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전검토사항 레이어 선택을 통해 각종 환경법규사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백두대간보호 관련 사항 등을 사전조회할 수 있음.

〔그림 4-9〕 EIAGIS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시스템 초기접근화면

자료(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 서울특별시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EIMS)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조회화면은 〔그림 4-10〕과 같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은 서울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 및 공지사항을 게시하기 위한 영역 이외에 크게 평가진행사업, 평가완료사업, 심의원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핵심적인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인 EIASS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정보 등록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제공 및 상세 조회에 기능 집중시킨 형태임.

〔그림 4-1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접속화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1) 평가진행사업

○ 평가진행사업 영역에서는 현재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조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본안), 보전방안서 단계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함.

○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단계, 진행상태, 등록일, 사업 분야, 사업명 등의 선택 및 입력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개별사업을 선택할 경우 〔그림 4-12〕와 같이 사업 기본정보 및 사업 접수정보, 그리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조회 및 파일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그림 4-11〕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조회화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그림 4-12〕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평가서 및 사업정보 제공화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2) 평가완료사업

○ 평가완료사업 영역은 평가가 완료된 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정보보관소(Archive) 역할을 하며, 〔그림 4-13〕와 같이 등록연도, 등록일, 사업분야 및 사업명 등으로 과거 영향평가 종료 사업에 대한 기록 및 환경영향평가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개별 종료 사업을 선택하여 상세정보를 조회할 경우 〔그림 4-14〕와 같이 사업 기본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평가서초안부터 평가서본안, 보완서, 재보완서 등 환경영향평가 일련의 승인과정에서 제출 및 검토 절차가 이루어진 모든 문서를 원문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협의 내용 및 이행계획서 및 종합보고 등의 제반서류들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제기된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여부 및 환경보전방안 등의 보완사항에 대한 실행상황의 확인이 가능함.

〔그림 4-13〕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조회화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그림 4-14〕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상세 조회 및 평가서 단계별 조회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3)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영역은 심의사업 대상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일정 및 장소 등을 공지하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 조회 시 심의 회차 및 사업번호 평가서 진행단계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심의일정 진행 상황에 대한 열람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EIMS의 경우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인 EIASS와는 다르게 심의위원회 정보조회는 가능하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 제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 기후환경연구센터 임시 웹사이트 시안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수도권 지자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초기 단계의 정보지원시스템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 그 시작 단계로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협의현황 조회 및 협의문건 등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그림 4-15-가〕는 협의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의 영역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건에 대한 사업정보 및 진행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중에 있음.

○ 〔그림 4-15-나〕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협의문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기에는 정보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하여 협의기관인 시청과 검토기관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각종 관련 문건을 기록보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림 4-15〕 인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초기운영 시안 ;
(가) 협의 현황조회 화면, (나) 관련 협의 문건 접근을 위한 접속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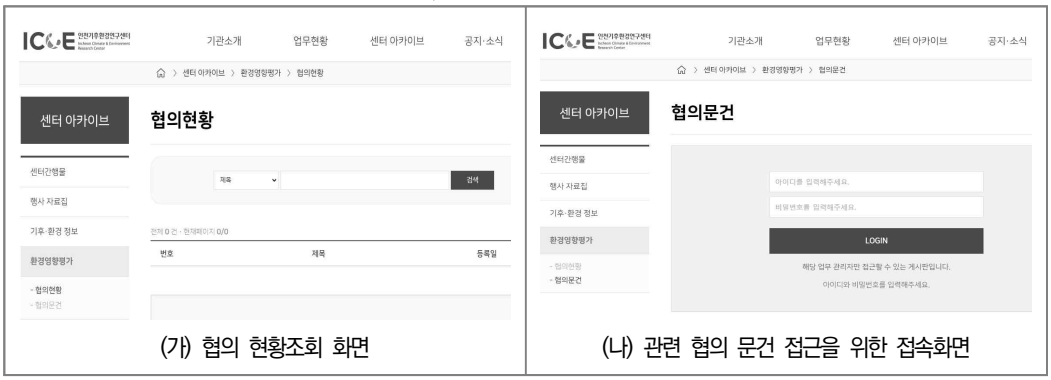

(가) 협의 현황조회 화면 (나) 관련 협의 문건 접근을 위한 접속화면

자료(출처)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climate.ii.re.kr/icerc/uce/boa/openCstnSttsList.do?mi=MN0166&mx_one=732&mx_two=762

2) 현황 개선방안

- ❍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인 EIASS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조회, 정보등록,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 등을 모두 제공하지 않더라도,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인 EIMS 수준의 종합적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범으로 마련한 정보지원시스템 초기운영 시안을 활용하여 평가진행사업, 평가완료사업, 심의위원회 및 제반 정보들을 관리 공지함으로써 차후 대상사업 시행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갈 필요 있음.
- ❍ 평가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단계와, 본안 협의 완료 시기 등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평가서 다운로드 기능을 포함할 계획임.
- ❍ 이를 위해서 단순 게시기능으로 국한되어 있는 시안을 진행사업에 대한 대장 형식의 건별 상세조회기능, 진행 완료 사업에 대한 기록저장 및 조회기능, 심의위원회운영 및 주민참여에 대한 공지 기능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편이 필요함.

3) 향후 구축 목표 및 계획

○ 우선 환경영향평가 현재진행 사업에 대한 조회기능 및 과거 종료 사업에 대한 정보저장소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계획하고자 함. 〔그림 4-16〕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안을 기본으로 추후 개선 및 보강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그림 4-16〕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안

MENU	SUB PART1	SUB PART2	SUB PART3	구분
환경영향평가 안내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			콘텐츠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도입배경			콘텐츠
	대상사업	- 대상사업 조견표		콘텐츠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	-조례 원문 -가이드라인 문건		콘텐츠
	평가절차			콘텐츠
	사후관리			콘텐츠
평가진행사업	작성계획서	- 사업기본정보 - 작성계획서	- 첨부계획서 다운로드	게시판
	평가서초안	- 사업기본정보 - 평가서초안	- 첨부평가서초안 다운로드	게시판
	초안공람	-공람 사업공지	- 공고안내 - 평가 계획서 및 초안	게시판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사업공지	- 공고안내 -주민의견 등록	게시판
	평가서본안	- 사업기본정보 - 평가서본안	- 첨부평가서 본안 다운로드	게시판
	보완 및 재협의	- 사업기본정보 - 보완서	- 첨부보완서 다운로드	게시판
평가완료사업	협의완료사업	- 사업기본정보 - 평가서정보 및 협의내용, 환경보전방안서등	-관련자료다운로드	게시판
공지·소식	공지 게시판	사업자 및 주민대상 공지사항		게시판
QnA	자주 묻는 질문	간추린 문답 정리		콘텐츠
	문의사항	게시판형식, 보안접근		게시판

-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수행된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단계, 등록일, 사업명, 사업분야 등의 검색어에 따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영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지역민, 사업자, 담당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용자 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함.
- 최근 감염병에 의한 집합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서도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있음.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분석 기능 등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나, 광역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에서 시스템구축, 운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 기능은 사업자의 참여 독려 및 업무 분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과거 검토 완료 사업에 대하여 저장소 형식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추후 사업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외부로부터의 시스템 교란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이버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 아울러,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내부사용자 (인천광역시 담당 공무원 및 인천연구원), 유관기관 (내부 사용자를 제외한 지방정부 유관기관), 평가대상사업 관련자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일반 사용자 (주민 및 일반인)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규정해야 함.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후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시범 운영 등의 활용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목표설정과 함께 실행해야 함.

5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 사항이 없어 현업 부서 및 참여 사업자, 시민 단체, 수행 용역 업체로부터의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실무상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사업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환경 현황 및 입지 등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인천광역시에는 자연환경 보호 관련 민감사항 등에 연계하여 갯벌 매립, 대형 교량 설치, 습지 보호, 육상 생물 서식지 보호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사항들이 존재함. 인천광역시에서 조례 제정 후 2015년까지 8건 정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가 보고된 바 있으나, 최근 지난 3년간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조례 내용에는 타 수도권 지자체 조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관련 법령과 함께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 요청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인가 시점 및 제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인천광역시 조례의 경우 시행규칙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 이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대상사업의 범위 측면에서도 상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비교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에는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종류가 누락되어 있음.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이 유사한 광역시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대상사업종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타 지자체 조례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세부 관련법별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있으므로 차후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추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특히, 도시개발 사업 중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대상사업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설정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의 조건 이외에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조건을 함께 적용하므로, 조례 개정 시 건축물 층수와 높이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향후 증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심으로 추정해보면, 조례 개정 시 연평균 5회 이상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본 근거인 조례가 존재하나 내용상 구체적인 협의 절차 안내가 부족하여 조례 개정 및 협의 절차 문서화가 필요한 실정임.
-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및 검토 결과 통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온라인화시켜 업무상 편의성과 투명성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시사점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검토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주관 부서와의 회의 및 수도권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파악하였음.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 개요, 평가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협의 결과 사후관리, 5개 부분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 개정과 함께 협의 가이드라인을 시청 관계 부서와 확정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의 소음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환경과와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관련 소음 현안 사항과 기타 의견을 확인하였음.

❍ 소음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체적으로 개요,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사업별 검토사항 3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며, 본문 성격인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준 부분은 현황 조사, 영향예측, 평가,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 전국단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은 (EIASS)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 환경영향평가과 주관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EIMS)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제공 및 상세 조회에 기능 집중시킨 형태임.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수도권 지자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질적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와 함께 초기 단계의 정보지원시스템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사업에 대한 대장 형식의 건별 상세조회기능, 진행 완료 사업에 대한 기록저장 및 조회기능, 심의위원회운영 및 주민참여에 대한 공지 기능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

선효성·조공장(2015).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환경영향평가서 평가항목별 작성 및 검토 매뉴얼 ver. 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2009).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환경부.

학술지/학위논문

성현찬·민수현(200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비교 연구. 환경영향평가, 12(3), 137-150.

김진오·민병욱(2020).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 29(2), 132-143.

관련 법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경기도조례 제6974호). 2021. 5. 4.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4177호). 2012. 11. 1. [일부 개정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대구광역시조례 제5311호). 2019. 8. 12. [전부 개정]]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9. 1. 1. [일부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10호). 2021. 7. 7.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947호). 2021. 3. 25.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39호). 2021. 7. 29.[일부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786호). 2017. 12. 7.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383호). 2014. 5. 26.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723호). 2021. 11. 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86호). 2021. 7. 9.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87호). 2021. 7. 9.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 개정]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650호), 2019. 4. 2. [일부 개정]

행정자료

서울특별시(201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2015).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네덜란드 환경평가위원회-NCEA(2021). ESIA profile. https://www.eia.nl/en/countries/netherlands+(the)/esia-profile(검색일 : 202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202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AMS). https://eims.seoul.go.kr (검색일 : 2021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2021). 인천광역시 자연환경현황. https://www.incheon.go.kr/env/ENV040101 (검색일 : 202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2021).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https://www.incheon.go.kr/env/ENV040302(검색일 : 202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2021). 인천광역시 건설 동향 및 통계. https://www.incheon.go.kr/build/BU050201 (검색일 : 2021년 5월 27일)

인천연구원(2021).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홈페이지. http://climate.ii.re.kr/icerc/uce/boa/openCstnSttsList.do?mi=MN0166&mx_one=732&mx_two=762 (검색일 : 2021년 6월 16일)

캐나다 환경부(2021). Impact Assessment Process Overview. https://www.canada.ca/en/impact-assessment-agency/services/policy-guidance/impact-assessment-process-overview.html(검색일 : 2021년 9월 2일)

한국환경연구원(202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https://eiass.go.kr/ (검색일 : 2021년 6월 16일)

부록

부록

〈부록 1〉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사례

1)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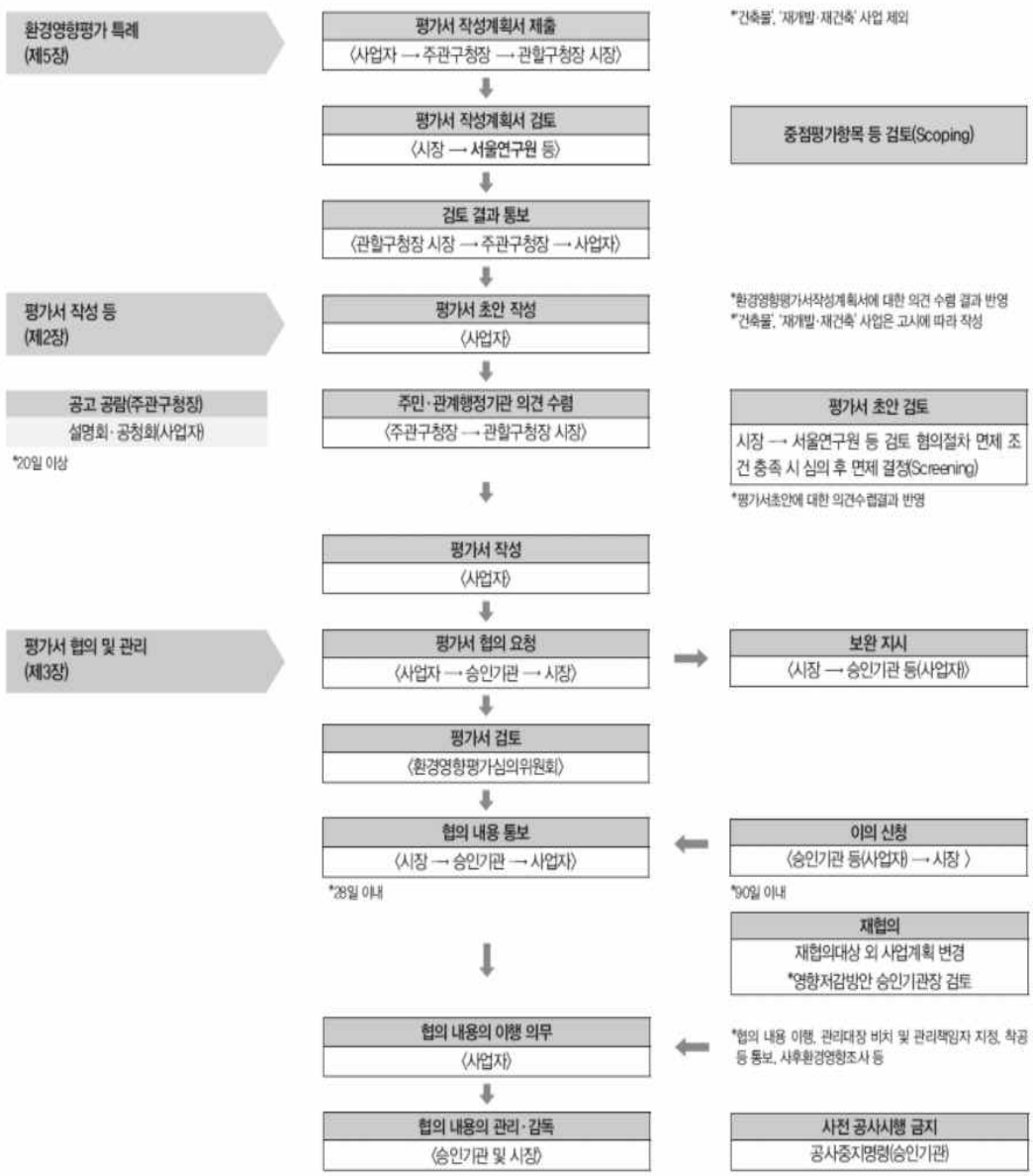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EIMS), https://eims.seoul.go.kr/eims/usr/guide/index.do

2)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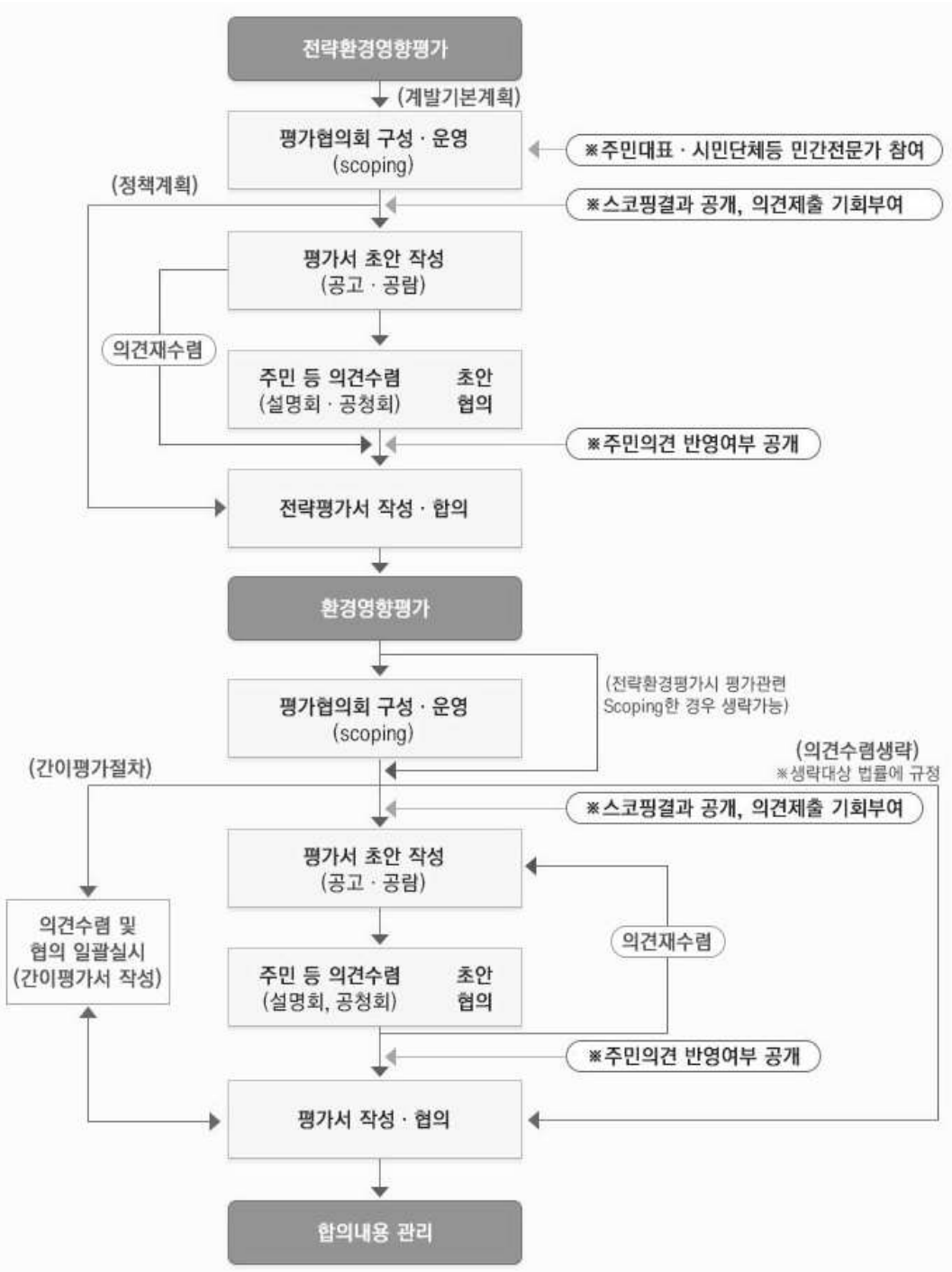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136

3)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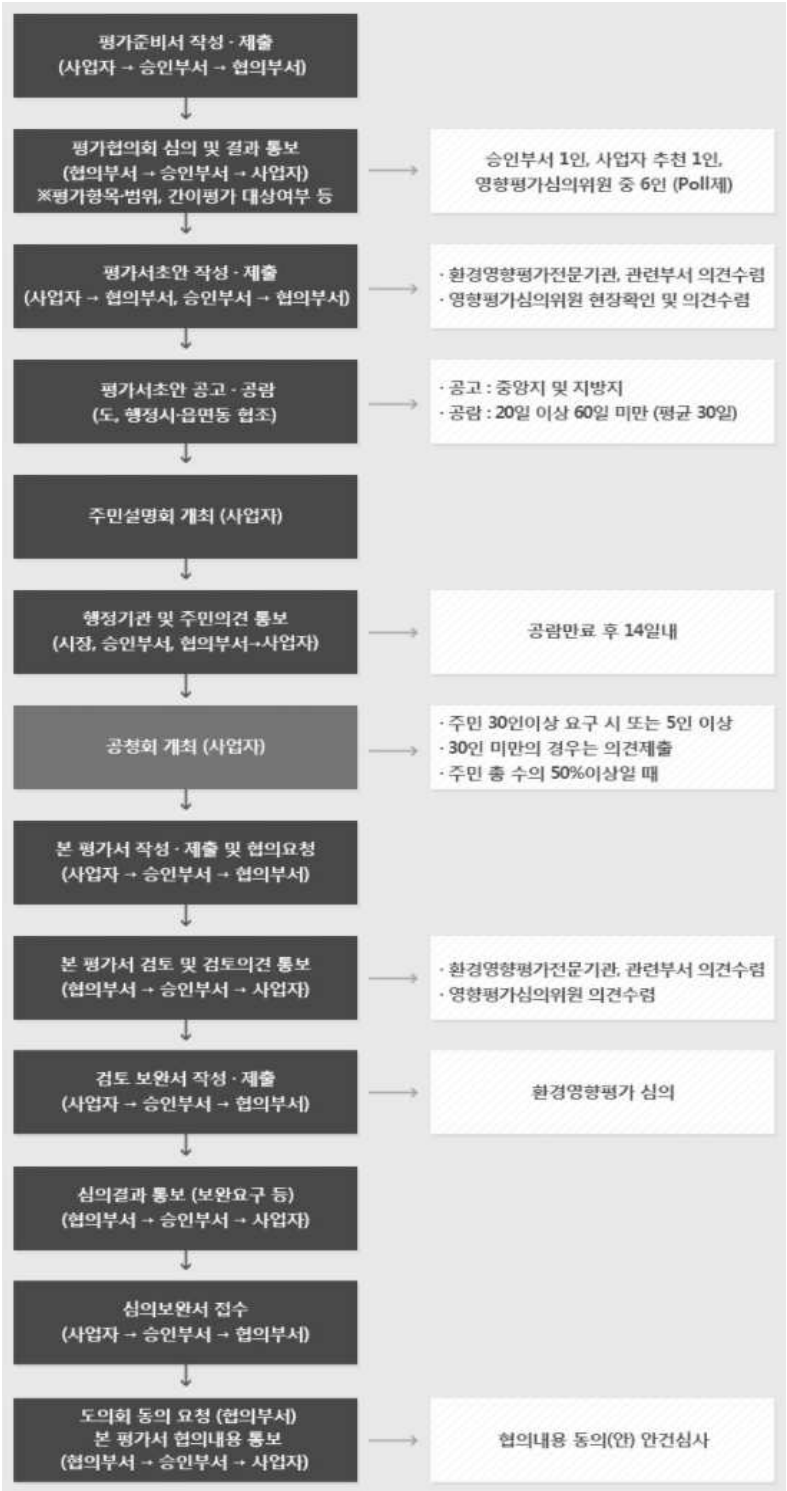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jejuenv/jejuenv/processing/processing01.htm

4) 부산광역시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environment/greenaudit0103

2021년도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발 행 인 이용식

발 행 일 2021년 10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주)

I S B N 979-11-6870-031-4 9353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ICE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4-4)
T. 032-715-5796 F. 032-715-5781 climate.ii.re.kr

93530
9 791168 700314
ISBN 979-11-6870-031-4